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811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1. 12. 17.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기조정 심의대상 구역 선정에 있어 기존에 시기조정을 받은 구역의 이주실행이 조정 받은 내용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 보완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4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통합하여 제3호 가목 및 나목으로 정리하고,
- 같은 항 제5호는 삭제하며,
- 제302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었으나 잘못 반영된 사항을 정정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5조제6항 중 “정비사업클린업시스템”을 “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”으로 한다.

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중 “정 비계획용적률을 뺀”, “추 진하기 어렵다고”를 “정비계획용적률을 뺀”, “추진하기 어렵다고”로 한다.

안 제30조제4항 중 “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”을 “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”로 한다.

안 제49조제1항 제3호 중 “(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, 완료된 구역으로 한정한다)”를 “(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)”으로 하고,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거나,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
- 나.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

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삭제한다.

상한초과용적률에
서 정비계획용적률
을 뺀 용적률의 10
0분의 50을 말한
다. 다만, 지역여건
등을 고려하여 사업
을 추진하기 어렵다
고 인정된 경우도
도시계획위원회 또는
도시재정비위원회
심의를 거쳐 100분
의 40까지 완화할
수 있다.

④ 법 제101조의6 제
2항에 따른 "시·도
조례로 정하는 비율
"은 법적상한초과용
적률에서 정비계획
용적률을 뺀 용적률
의 100분의 50을
말한다. 다만, 지역
여건 등을 고려하여
사업을 추진하기
어렵다고 인정된 경
우 도시계획위원회
또는 도시재정비위
원회 심의를 거쳐 1

상한초과용적률에
서 정비계획용적률을
뺀 용적률

- 추진하기 어렵다고

④

-- 법 제101조의6
제1항에 따라 완화된
용적률에서 정비계획
용적률을 뺀 용적률

---- 추진하기 어렵
다고

<p>가 2,000호를 초 과하는 경우</p>	<p>----- ----- -- <u><신 설></u></p>	<p><u>가.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,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</u> <u>나.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<u>기 시기조정 구역 중 이주계획이 변경된 경우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5. <u>그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이나 구청장이 인가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6항 중 “정비사업클린업시스템”을 “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 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3항 및 제4항 중 “정비계획용적률을 뺀”, “추진하기 어렵다”를 “정비계획용적률을 뺀”, “추진하기 어렵다”로 한다.

제30조제4항 중 “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”을 “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제3호 중 “(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, 완료된 구역으로 한정한다)”를 “(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)”으로 하고,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,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
- 나.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분계확인가를 신청하였거나,
관리처분계확인가를 받은 구역
나.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
지 않은 구역